

선행학습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31조의2에 의거 본 대학교에서의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절차와 범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행학습이란 학칙31조2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근무한 경험을 말한다.

2. 선행학습 학점인정이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근무한 경험 등에 대하여 제8조 평가인정절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련성 및 기준) ①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근무한 경험 등이 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모집단위의 교육과정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②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학습·연구·실습·근무한 경험 간의 관련성 유무 판단기준은 해당 전공 전임교원의 확인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2021.1.25.개정)

제4조(산업체 인정기준) 산업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8.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9. 기독교한국루터회에 속한 기관 또는 지역교회
10. 각 전공에서 유관 전공으로 선행 학습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2021.1.25.신설)

제5조(학점인정 대상자) 학점인정 대상자는 본교 재학생 또는 입학할 허가받은 자로서 선행학습 학점인정을 직접 신청한 자에 한한다.

제6조(선행학습인정위원회 구성) ① 다른 교육기관 등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인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학처장,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산업체 인사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학점인정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학과별 학점인정소위원회를 둔다.

⑤ 학점인정소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학과장을 제외한 소속학과 전임교원 전체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겸임교수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선행학습인정위원회는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평가결과<별지 제4호 서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행학습 학점인정 기준에 준하는지 여부
2. 개별 신청자의 평가인정 학점한도 초과여부
3. 기타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점인정 범위) ① 선행학습 평가인정을 통한 학점인정은 학과가 지정하는 특정한 교과목에 한하며 그 범위는 최대 33학점까지로 한다. (2022.11.23.개정)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습경험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4.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내지 2호에 따른 학습경험 중 석사학위 교육과정 이상에서 취득한 학점은 선행학습 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학점인정절차) ① 선행학습에 대한 학점인정은 제5조에 의한 학점인정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학과별 학점인정소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② 학과별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평가결과는 교무처를 거쳐 선행학습인정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③ 선행학습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9조(학점인정신청) ① 선행학습인정 신청자는 입학허가시점부터 졸업이전까지 매학기 1회 학점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점이수 인정 신청은 해당 학기 개시전에 교학처로 신청한다.

② 매학기 선행학습인정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학생은 선행학습인정 교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에서 21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 학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점인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자
2. 과거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위원회가 학점인정신청을 제한한 자

④ 학점인정 신청자는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에 신청하되, 신청과정에서 학과장의 안내와 상담을 거치도록 한다.

⑤ 학점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행학습이수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직무기술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4. 이력서, 직무기술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학점 인정을 위한 평가 근거자료

제10조(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시 신청 교과목별로 실시하며, 성적평가는 학칙에 따라 P(Pass)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자 제출자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선행학습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재직기간에 따른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한다.

1. 1년 이상~3년 이하는 2학점
2. 4년 이상~6학년 이하는 4학점
3. 6년 이상은 6학점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신청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학생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추가서류를 제출한다.

⑤ 선행학습인정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 평가결과를 교학처로 제출한다.

제11조(보칙) 기타 선행학습인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신청학기	학년도 학기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교양/전공)					
학부/학과		학 번			
성 명	(한글)	전 화	자 택 (직 장):		
	(한자)		휴대 전화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평가인정 신청과목	구 분	신청 교과목명	학 점	직무	
	교양				
	교양				
	전공				
	전공				
		신청학점 계		학점	
이전학기 평가인정 교과목	인정교과목명		직무		인정학점
<p>본인은 학칙 제31조에 의거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된 문서와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학점인정 취소 등을 포함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p> <p>첨부자료 : 직무기술서, 교육경험기술서 증빙자료(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이전 대학 성적 증명서)</p>					
접수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별지서식 2]

신청학기	학년도 학기				
선행학습 직무기술서					
학 과		학 번			
학 년		성 명	(서 명)		
직 무 경 력					
직 장 명	근 무 부 서 명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직무 경험 기술					
※ 신청 분야와 관련된 교육 또는 근무(직무) 경험을 적어주십시오.					
직무내용	<p>- 직무내용, 교과목과의 관련성, 경험 시기 및 빈도, 숙달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참여한 교육이력, 직무 연수경험(연수제목, 연수기관, 연수시간, 연수내용 등) 등을 알 수 있도록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일자 :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p>				
<input type="checkbox"/> 직무수행 능력					
구분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직무지식(이론)					
직무스킬(실기)					

[별지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루터대학교에서는 선행학습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는 대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절차, 제증명서발급, 학점인정 심의	학점인정 신청 및 심의 시까지 활용, 영구보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사진, 성명, 학번	본인 식별절차에 이용	학점인정 신청 및 심의 시까지 활용, 영구보관
이메일, 연락처, 주소	공지사항 등 서비스 정보의 제공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사항 (학력사항 등)	자격 확인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4]

선행학습 평가서

1. 기본정보

성 명		학 과 명		학 년	
학 번		평가시기	년	월	일

2. 교과목 평가사항

과 목 명		이수구 분		개설시 기		학년도	학기
개설학점		수업시 수					
구분	기준항목	평가 점수					합계
전적대 학 취득학 점	교과목의 교육목표 일치성	5	4	3	2	1	____점 / 20점
	교육과정(주차별)의 일치성	5	4	3	2	1	
	이수구분(전공/교양/교직)의 유사성	5	4	3	2	1	
	교과목에 대한 이해정도	5	4	3	2	1	
선행학 습 취득학 점	교과목과 담당직무의 일치성	5	4	3	2	1	____점 / 25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직무 담당기관의 적절성	5	4	3	2	1	
	직무에 대한 이해정도	5	4	3	2	1	
	직무관련 문제해결 능력	5	4	3	2	1	
	조직 업무 프로세스의 이해정도	5	4	3	2	1	

주1) 전적대학 취득학점은 해당 기준항목의 평가점수가 14점 이상(20점 만점)일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
 주2) 선행학습 취득학점은 해당 기준항목의 평가점수가 18점 이상(25점 만점)일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

학점 평가인정 평가 내용		
평가 의견		
인정 여부 (해당란에 ☑)	취득학점	<input type="checkbox"/> 인정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평가자 확인	(서 명)	